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제1조의3(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

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협약서
2.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제14조의3(표준약정서 제정·개정안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의4(자문위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5(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 방식의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 방식의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위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위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용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7(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위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위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8(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추는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 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향온·향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제17조(분쟁조정요청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요청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

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별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별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별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별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 ⑧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⑧ 조정심의회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 [중전 제2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조사 업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별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제27조의3(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2.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7. 삭제 <2016. 6. 21.>
1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7.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가

스공사가 출자한 한국가스기술공사

2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9.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0. 삭제 <2021. 8. 31.>
3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3.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KDN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3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4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코레일유통주식회사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주택관리공단
4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4. 「항만공사법」에 따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4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 특성 및 사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4조의8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사업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법 제22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별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별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별점에서 제3호에 따른 별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별점을 부과하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별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가. 별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점
-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점
- 3) 법 제27조제2항·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점
- 4) 법 제27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표: 3.1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2)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
- 4)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의2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별점은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법 제21조제4항 위반행위): 3.1점. 다만,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2)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 위반행위): 5.1점

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이 별표 제3호가목5)에 따라 별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별점 5.1점을 부과한다.

마. 조사 대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공표는 제외한다)를 받기 전에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경감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서 조사 대상 위탁기업이 법 제40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퍼센트 지급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별점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2) 1)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별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별점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바.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결정되는 별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별점을 부과한다.

3. 별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점

3)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 따른 점수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5)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1) 수탁·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인상반영률} = \frac{\text{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text{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times 100$$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text{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left(\text{품목별 인상반영률} \times \frac{\text{품목별 납품물량}}{\text{조정을 신청한 전체품목의 납품물량}} \right) \text{의 합}$$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한다)

가)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위탁기업이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납품대금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점

나)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점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점

나.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2조의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제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천만원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라. 법 제21조의제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 대기업인 경우		500만원		
2)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28조의제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	100만원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1억원		
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3호	500만원		
아.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
2) 1) 외에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		